

대한호신협회 임원 선출규정



대 한 호 신 협 회

대한호신탁회 임원 선출규정

제정 2026년 1월 10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호신탁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, 민주적인 협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본회의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3조(설치 및 운영)

- ① 임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 종료 후 당선자 확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

- ① 선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본회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 또는 외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장 임원의 선출

제5조(선출 임원)

본 규정에 의해 선출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약간 명
3.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
4. 감사 1인 이상

제6조(회장의 선출)

-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,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③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거나,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7조(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)

-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.
- ② 효율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감사의 선출)
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행정 감사 1인과 회계 감사 1인을 둔다.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.

제4장 입후보 및 선거운동

제9조(입후보 자격)

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회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
2. 무도 및 호신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,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
3.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(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등)에 해당하지 않는 자
4. 기탁금을 납부한 자 (회장 후보에 한함)

제10조(등록)

①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
2.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1부
3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4.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

② 회장 후보자는 등록 시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기탁금은 선거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1조(선거운동)

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.

② 선관위는 합동 소견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5장 임기 및 보선

제12조(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종료 후부터 시작된다.

제13조(보선)

-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대 임원 선출의 특례) 본회 창립 당시 선출되는 초대 임원(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)은 창립 총회에서 발기인들의 추천과 의결로 선출하며,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9조(입후보 자격) 및 제10조(등록)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.